

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5. 30.(수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「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」(고시)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30-108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허가 신청요령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심사기준 보완

- ‘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’을 별도 심사사항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(5점→10점)하는 등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(심사항목, 배점) 체계 조정
- 일시출연금(주파수할당대가) 상·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 제시금액에 따라 가점(2점)을 부여하였으나, 전과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가점조항 삭제
-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, ‘역무’ 관련 용어를 ‘서비스’로 대체하여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 하도록 개선

②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

- 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 중 계량평가시 자료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(최저점)를 하향조정(60점→40점)하여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
- 심사결과 통보 시 ‘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’의 경우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(허가적격여부 통보: 신청일로부터 1개월→60일, 심사결과 통보: 신청일로부터 2개월→120일)하여 심사 지연 문제 해소
- 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서류(출자확약서 사본, 이사회결의서, 구성주주 현황자료, 현물출자 관련 내용)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

○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: 이해관계자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영

위원회 보고안('12. 02. 03.)	위원회 의결안('12. 05. 30.)	비고
<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>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	<자본금 규모를 평가요소에 반영> 자본금 규모를 평가요소에 반영(최대 3점 감점)하고,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90일전 사전 공표	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반영
<심사결과 통보기산일 변경> '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'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기한의 기산일을 변경(허가 신청일→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)	<심사결과 통보기한 연장> 심사결과 통보 시 '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'는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연장(허가적격여부 통보 : 신청일로부터 1개월→60일, 심사결과 통보 : 신청일로부터 2개월→120일)	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반영

<신청서류 보완>

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 등 계약서
원본 제출

<신청서류 보완: 기준완화>

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 등 계약서
사본 제출

이해관계자 의견
수렴결과 반영

o 향후일정

- '12. 6월초 : 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

나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2012-30-109)

- o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20차 위원회('12.4.10) 보고 후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①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납부절차 개선 (안 제44조 제2항, 안 제45조 제2항)

- 수신료 면제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'수신료면제신청서'를 삭제하고, 수신료 6개월분 선납 시 감액 규정에 신청 절차 명시

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방법 (안 제54조 제2~3항)
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

③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의무대상 확대 (안 제57조 제2~4항, 제7항)

-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·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·애니메이션을 50%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하고 편성비율 등은 고시로 위임

※ 상기 사항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'13.1.1부터 시행 (부칙)

④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(안 제65조의 2)

-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,
-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업무를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 및 방송장비 대여,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교육으로 규정

※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5인 이내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 (부칙)

o 향후일정
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'12. 6월
- 차관·국무회의, 공포 : '12. 7월

다.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2-30-110)

-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절차

- (단위시장 확정)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,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, 서비스 거래의 특수성, 이용자의 특성 등을 감안,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(방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)
- (평가지표 개발) 시장구조, 시장성과, 이용자 대응력 및 사업자 행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개발, 경쟁상황 평가의 척도로 활용 (방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)
- (자료 수집 및 측정) 「방송산업 실태조사」 및 「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」,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지표를 측정
- (분석 및 평가) 측정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단위시장 별로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·평가
- 종합편성 채널, 신유형 방송서비스, 광고판매 제도 재편 등의 이슈가 시장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포함

② 전문 연구기관 선정

-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'협상에 의한 계약방식'(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)을 적용하여 선정
- 기술능력 평가(제안서에 대한 평가)와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80 : 20으로 함
- 기술능력은 방통위가 방송 분야 경쟁상황평가 관련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, 가격은 조달청에서 평가

○ 향후 추진일정

- '12. 6월 중 :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연구기관 선정
- '12. 9월 : 시장획정(안) 위원회 보고
- '12. 12월 :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(안) 위원회 보고
- '13. 2월 : 평가 결과 국회 보고

라.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관한 건 - (2012-30-111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위성방송사업자를 통해 지상파방송이 그 허가권역 외로 재송신될 수 있는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(운용방안)

- ①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재송신 승인은 기존의 절차와 방식대로 유지
- ② '11. 7월 서울지역 모든 SO에게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한 점을 감안하여 SO의 기준에 준하여 지상파방송의 권역을 벗어나는 재송신 승인 기준을 마련

- o 승인원칙 : 위원회에서 승인의 재량권을 행사
- o 유효기간 : 3년 범위내(연장 가능)
- o 대상방송 : 자체편성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허용
 - 이미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
- o 대상지역 : 수도권 지역(서울 포함)
- o 심사기준 : 방송법시행령(제61조제3항)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심사
 -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등 6개 항목
- o 재송신유형 : 수신제한시스템(CAS)을 이용한 동시재송신(일부 시간대 재송신 불허)
- o 승인철회 : 부정행위, 약정의 종료,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 발생시
- o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설정 : 방송사업자간 재송신 약정의 변경·종료 시

o 향후일정

- KTSkylife의 OBS 서울지역 재송신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 : 6월 중순
- 이해관계자(지상파방송사, SO·IPTV사업자 등) 의견 청취 병행
- 승인 여부 의결안건 상정 : 6월말

7] 보고사항

가. 시·청각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「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」 제정에 관한 사항

- o 장애인에게 일반 이용자와 동등 수준의 통신접근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「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」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- ① 가입 및 해지 단계에서의 준수 및 노력사항
 - (웹 접근성)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함
 - (가입서류) 통신서비스 설명서, 이용약관, 계약서, 가입신청서 등이 음성, 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

- (정보제공)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정보를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협회, 관련 장애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
- (수화통역사 배치) 청각장애인의 콜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상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
- (청각장애인 전용대리점) 권역별 일부 대리점 또는 직영점의 청각장애인 전용 대리점 지정과 수화통역사 배치·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

② 이용 단계에서의 준수 및 노력사항

- (요금제) 신규서비스 도입 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에 노력하도록 함
- (요금감면 안내) 장애인 가입자에게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 ‘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’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함
- (요금고지서) 스마트폰의 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하여 요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‘음성안내고지서’를 제공하도록 함
- (단말기) 장애인 전용단말기 보급, 단말기에 스크린 리더 기능 탑재, 영상통화 가능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위해 단말 제조사와 협력하도록 함
- (중계서비스) 통신중계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, 장애인협회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

○ 향후 계획

-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시행 : ‘12. 6월

나.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, 변경허가,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제정에 관한 사항

-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허가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(안 제3조~제6조)

- 허가신청 자격요건, 허가신청서 구비서류, 허가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신청서류의 보정 절차를 마련

② 허가신청 적격 여부 (안 제7조)

-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허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법인에 통보

③ 허가기본계획 수립 (안 제8조)

- 허가심사를 위해 심사일정, 심사반 구성·운영,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

④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(안 제9조 ~ 제10조)

- 각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하고,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법인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

< 심사항목 및 배점 >

심사항목	배점	세부 심사항목
(1) 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·공정성 및 실현가능성	20	○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○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(2) 네트워크 지역방송사 지원방안	20	○ 결합판매 의무 이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○ 광고매출 배분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○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(3) 중소지상파방송사 지원방안	20	○ 결합판매 의무 이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○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(4)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	13	○ 대행규모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조직·인력을 갖출 것
(5)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	12	○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이 적정할 것
(6)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	10	○ 표준화, 공익광고 제작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
(7)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	5	○ 사업개시 시기 등이 적정할 것

⑤ 허가심사 기간 (안 제11조)

-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,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
⑥ 허가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(안 제12조)

- 허가심사위원은 방송, 광고, 법률, 경영·경제,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로 구성·심사함

⑦ 변경허가·최다액출자자 승인·재허가 (안 제15조 ~ 제21조, 제23조 ~ 제25조)

- 변경허가·최다액출자자 승인·재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 (허가절차 준용)

⑧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 (안 제22조)

-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에 대해 방통위 승인절차를 규정

○ 향후 일정

- 행정 예고 : '12년 6월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년 6월
-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 : '12년 6~7월

Ⅷ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6. 7(목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0)